

의 정 정 보

2005 - 1 1. 1

- 그동안 의원님께 제공해 드린 「의정동향」 「의정자료정보」誌의 성격이 유사하여, 2005년 부터는 「의정정보」誌로 월2회 발간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- 2005년 제1호 「의정정보」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수록하였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① 일반사항	1
② 지방재정제도	1
③ 공무원 채용분야	2
④ 지방세 분야	3
⑤ 관광분야	5
⑥ 경제분야	6
⑦ 농정분야	7
⑧ 축산분야	8
⑨ 해양수산분야	9
⑩ 복지분야	10
⑪ 보건분야	12
⑫ 환경분야	13
⑬ 수질분야	14
⑭ 건축분야	15

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

1 일반사항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행정기관 토요휴무제	○ 매월 2회 실시 (둘째, 넷째주)	○ 모든 토요일 휴무	국가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(’05.7.1)
○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	○ 내국인 : 읍·면·동장 ○ 외국인 : 시·구·읍· 면장	○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시·구·군청 및 읍· 면·동에서 발행 ※ 발행기관 郡廳까지 확대	인감증명법 (’05.1.17)
○ 여권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조정	○ 5년 : 45,000원 ○ 1년 : 15,000원 ※ 국제교류 기여금 포함	○ 10년 : 40,000원 ○ 5년 : 35,000원 ○ 5년미만 : 15,000원 ※ 국제교류 기여금 미포함	· 일반여권 : '05. 7 (예정) · 관용여권 : '05. 1 (예정)

2 지방재정제도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지방교부세제도	○ 법정교부율 - 내국세 총액의 15% ○ 운 영 : 3개분야로지원 - 보통교부세 - 특별교부세 - 증액교부금 (신 설) (신 설)	○ 법정교부율 - 내국세 총액의 19.13% ○ 운 영 : 4개분야로지원 - 보통교부세 - 특별교부세 (폐 지) - 도로분교부세 - 분권교부세	지방교부세법 제3조 (’05.1.1)
○ 지방양여금 제도	○ 酒稅 등의 재원으로 - 年間 4조원 정도 지원(전국)	○ 사업성격에 따라 -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,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로 재편	지방양여금법 폐지 (’05.1.1)
○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발행	○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발행	○ 道議會의 승인을 받아 발행	지방공기업법 제19조 (’05 상반기중)

3 공무원 채용분야

① 지방공무원(일반직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응시수수료	(신 설)	○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수수료 납부	道지방공무원 인사규칙 (’05.1월중)
○ 응시결격사유	○ 제한경쟁특별임용시 자격기준시점 시험 요구일	○ 제한경쟁특별임용시 응시자격기준 시점 최종시험예정일	”
○ 면접시험관련	○ 면접시험은 「가·부」만을 판단	○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정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는 각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인권과 관련하여 면접 요소에서 「용모」 분야 제외	”
○ 응시자격	○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제한경쟁 특별 임용 서류전형시 결격 사유만 없으면 통과	○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제한특별임용 서류 전형시 시험실시 기관장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으로 합격자(5배수)를 결정할수 있는 근거 마련	”
	(보 완)	○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의 명칭 등 개정 또는 보완 공무원 시험령(국가직)등에서 정한 자격증을 준용 대우	”

② 소방공무원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공개채용시 응시연령	○ 소방사 · 지방소방사 - 21세이상 30세이하 (여자:18세이상 25세이하)	○ 소방사 · 지방소방사 - 21세이상 30세이하	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관련별표2 (‘05.1.21)
○ 공개채용시 시험과목	○ 소방분야 : 4개과목 - 국어, 국사, 사회, 영어 ○ 운전분야 : 3개과목 - 국사, 사회,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구조원리	○ 소방·운전분야 구분 없음 ○ 필수 : 국어,국사,영어 ○ 선택 : 소방학개론, 행정학중 택일	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관련 별표3 (‘05.1.21)
○ 공개채용시 신체조건표	○ 남 : 55kg이상(특수기술분야53kg) ○ 여 : 48kg이상(특수기술분야46kg) ○ 시력 : 나안 각각 0.3 이상 교정 각각 0.8이상 ○ 색신 : 색맹	○ 남 : 57kg이상 ○ 여 : 48kg이상 ○ 시력 : 나안 각각 0.3이상 ○ 색신 : 색각이상(색맹 또는 색약)	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(‘05.1.21)
○ 공개 · 특별 채용시 응시자격	○ 소방분야,운전분야 구분	○ 소방·운전분야 구분 없음 - 제1종운전면허증 대형 또는 보통면허소지자	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(‘05.1.21)
○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비율	○ 1종대형 운전면허증 가점 0.3할	○ 1종대형 운전면허증 가점 0.5할	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 규칙제24조관련 별표6 (‘05.1.21)

④ 지방세 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종합토지세 부과방법 조정	○ 종합 토지세와 재산세로과세	○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○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	지방세법 제180조 등 (‘05년시행예정)
○ 거래세인 등록세율 조정	○ 등록세 세율 3%	○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록세의 세율 2% 인하	지방세법 제131조 (‘05년시행예정)
○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	○ 농업소득세 과세	○ ‘05부터 5년간 완전 면제 ○ 창업 2년이내의 영농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	지방세법 부칙 제4조 (‘05년시행예정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	○ 지방세감면 대상에 미포함	○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○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○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 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 인가 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 면제 ○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에 물류시설,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 업종을 추가 ○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 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 ○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면제	지방세법 제262조 (‘05년시행예정) 제266조 (‘05년시행예정) 제272조 (‘05년시행예정) 제276조 (‘05년시행예정) 제280조 (‘05년시행예정) 제284조 (‘05년시행예정)
○ 자동차세 세율체계 조정	○ 배기량 1,500 CC이하의 경우 CC당140원 과세	○ 배기량 1,600CC이하의 경우 140원 과세	지방세법 제196조의 5 (‘05년시행예정)
○ 5.18 민주유공자 취득세·등록세 감면	(신 설)	○ 국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㎡ 이하 주택 취득세· 등록세 면세	도세감면 조례 제2조 (2005. 1월중 시행예정)
○ 재래시장 활성화 를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	(신 설)	○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·등록세 면세	도세 감면 조례 제15조 (2005. 1월중 시행예정)
○ 협동화 산업단지 지방세감면범위 확대	○ 기조성된 협동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만 취득세·등록세 면제	○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얻어 취득시도 면제	도세감면 조례 제17조 (2005. 1월중 시행예정)

5 관광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여행업·관광 숙박업 등에 대한 등록 권한	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	○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	관광진흥법제4조 (’05.4.16)
○ 관광사업 양수등의 경우 행정처분효과 승계	(신 설)	○ 관광사업 양수 또는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 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	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 (’05.4.16)
○ 유원 시설업의 조건부 허가	(신 설)	○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	관광진흥법 제29조의2 (’05.4.16)
○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실효 제도 도입	(신 설)	○ 관광지를 조성한 후 2년 이내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 관광지지정 또는 조성계획 효력 상실	관광진흥법 제53조의 2 (’05.4.16)
○ 관광특구 지역안의 시설지원	(신 설)	○ 관광특구 지역안의 문화·체육시설, 숙박 시설 등 관광객 유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진흥개발 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	관광진흥법 제68조의 2 (’05.4.16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조성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과 인허가 등 의제사항 마련	○ 관광진흥법 제 52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유원 시설업결정, 지형 도면의 결정, 도시 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 계획의 인가	○ 관광진흥법 제 52조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이용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지역의 결정, 지형 도면의 승인, 도시계획 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의제 처리	관광진흥법 제 55조 (’05.4.16)

6 경제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○ 공장설립 기간 단축	○ 공장설립승인 기한 : 30일 ○ 공장등록통보기한 - 공장설립 완료 신고후 7일	○ 공장설립승인 기한 : 20일 ○ 공장등록통보기한 - 공장설립 완료 신고후 3일	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 규칙제 6·10조 (’05. 1월중)
○ 공공근로 사 업	○ 참여자격 연령 - 만18세~60세 이하	만18~65세 이하	道 공공근로사업 지침(’05.1.1)
	○ 참여자격(경작규모) - 0.1ha이하	0.5ha이하	”
	○ 참여자 임금단가 - 노동강도 높은사업 27천원 이하 - 청년실업대책사업 27천원 이하 - 재해피해복구사업 (신설)	29천원 이하 29천원 이하 29천원	”

7 농정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농어업인 건강 보험료지원	○ 건강보험료 경감률 : 30%	○ 건강보험료 경감률 : 40%	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등 ('05.1.1)
○ 농업인의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	○ 국가보조사업 ○ 농지 1.5ha미만 농가	○ 지방이양사업 ○ 지원대상 : 전체농가	농어촌발전종합 대책 실천계획 ('05.1.1)
○ 농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	○ 농지소유 1.5ha미만 ○ 보육료 50%지원	○ 농지소유 2ha미만 ○ 보육료 50%지원	농업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('05.1.1)
○ 농업경영권선택 범위 확대	○ 분야 : 원예, 축산, 가공 ○ 재원 : 국30%, 지20%, 자50%	○ 분야 : APC, RPC, 쌀전업농 추가 ○ 재원 : 국50%, 지20%, 자30%	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('05.1.1)
○ 디지털 사랑방 설치	(신 설)	○ 지원기준 - 1개소 30백만원 ○ 재원 : 국50%, 지50%	농업농촌기본법 ('05.1.1)
○ 창업농 후견인제	(신 설)	○ 지원기준 - 1인 5백만원 ○ 재원:국70%, 지30%	농업농촌기본법 ('05.1.1)
○ 농업인틴쉽 (연수생)	(신 설)	○ 지원기준 : 5백만원 /인 ○ 재원 : 국70%, 지30%	농업농촌기본법 ('05.1.1)
○ 농기계 의무부착 장치추가	○ 9개 장치 - 전기시동장치, 동력취출 장치, 동력차단장치, 제동장치, 조종장치, 방호장치, 등화장치, 운전자보호장치, 안전표시	○ 11개 장치 - 배기관, 경보장치	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('05.5.18)
○ 안전장치 부착대상 농기계 추가	○ 7기종 - 농용트랙터,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, 승용자주용스피 드스프레이어, 콤바인, 승용자주형동력운반차, 동력경운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	○ 9기종 - 승용이앙기, 승용관리기	"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 련 법 규 (시행일)
○ 신기술농업 기계 개발 및 보급업무추진	○ 농림부장관 시행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	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(’05.5.18)
○ 농기계 무상 수리기간	○ 원동기, 동력전달장치 : 2년 ○ 기타장비 : 1년	○ 원동기, 동력전달 장치 : 2년이상 ○ 기타장치 : 1년이상	”
○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등급 조정	○ 5단계 - 도, 시군(갑,을,병), 읍면	○ 3단계 - 대형, 중형, 소형	”
○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시설기준추가	○ 시설기준 : 2개분야 - 작업장, 부품	○ 시설기준 : 4분야 - 수리장비,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추가	”
○ 소득안정직접 지불제 도입	○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 소득보전직접 지불제로 구분 농가 지원	○ 통합 운영 -쌀 가마당 17만원 (80kg)수준 목표 가격 설정후 쌀 값 하락시 농가 차액을 보전	농업농촌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 (’05. 1. 1)
○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 조기 지급	○ 이행점검 : 7~10월 ○ 보조금지급 : 12월	○ 이행점검 : 7~8월 ○ 보조금 지급 : 10~11월	농업농촌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 (’05. 1. 1)

⑧ 축산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 련 법 규 (시행일)
○ 쇠고기 등급 의무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정	○ 등급표시 - 등심 및 채끝 부위와 해당 소분할 부위 ○ 등급표시방법 - 예) 1 + 등급 또는 특상등급(1 +)	○ 등급표시 - 등심,채끝,안심양지 및 갈비부위와 해당 소분할 ○ 등급 표시방법 - 예) 1 + 등급	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농림부고시 제’04-20호 (’05. 7. 1)

9 해양수산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선박승무 기준의 강화	○ 5톤미만 선박중 여객 정원이 13인이상 선박만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함	○ 5톤미만 선박중 낚시 어선 및 유·도선도 해기사 면허 받아야 함	선박직원법 (‘05. 8)
○ 어선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어선의 선원법 적용 범위 확대	○ 25톤미만 어선은 선원법 적용 제외	○ 선원법 적용 대상을 20톤이상으로 확대	선 원 법 (‘05. 7)
○ 어선원 유급 휴가제 도입	(신 설)	○ 어업의 업종에서 1년 이상계속 승무한선원	선 원 법 (‘05. 7월)
○ 담보권 등이 설정된 방치 폐선의 직권 처리를 위한 절차, 규정마련	○ 방치선박 중 담보권 등 권리가 설정된 폐선은 이해관계인이 동의시 제거처리 불가	○ 방치폐선 이해 관계인 에게 이의 제출권한을 부여하고, 이의서 미제출시 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 가능	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(‘05년 중)
○ 일선수협 제도 개선	○ 상임이사 : 자율적 도입 ○ 조합장 연임: 제한없음 ○ 조합장선거 : 자체선거 ○ 외부회계감사 : 없음	○ 상임이사 : 도입의무 ○ 조합장연임 : 1회연임 ○ 조합장선거 : 선관위 위탁 ○ 외부회계감사 : 일정 규모이상 도입 의무화	수 협 법 (‘05. 하반기)
○ 어선보험 가입 비율 개선	○ 잔존가액의 100~80%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	○ 잔존가액의 80~50%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	어선원및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‘05.1)
○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낚시터 허용	○ 당해어장에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	○ 낚시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·채취도 가능	유어장의지정 및관리에관한 규칙(‘05.7월)
○ 육상양식 (종묘생산) 어업허가	○ 육상양식 및 육상 종묘 생산어업, 신고제로 운영	○ 기존 허가어업인 해상 종묘생산어업에 포함하여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 생산어업도 허가제로 전환	수산업법 (‘05. 6)
○ 연안 및 구획 어업에 사용 하는 어선의 중톤 제한	○ 연안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- 8톤~10톤까지(구획 어업 5톤)자유롭게 중톤 가능	○ 일정 규모까지는 종전과 같이 중톤이 가능하나 ○ 그 이상으로 중톤 하고자 하는 경우, 동일업종의 어선을 매입 · 폐선한 규모만큼 중톤 가능	수산업법 (‘05. 6)

Ⅹ 복지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건강가정구현을 위한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	〈 신 설 〉	○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가정생활을 지원 - 시군별로「건강가정 상담」등 실시	건강가정 기본법 (‘05.1.1)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	○ 1인 368,226원 2인 609,842원 3인 838,797원 4인 1,055,090원 5인 1,199,637원 6인 1,353,680원	○ 1인 401,466원 2인 668,504원 3인 907,929원 4인 1,136,332원 5인 1,302,918원 6인 1,477,800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(‘05.1.1)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현금급여 기준인상 (가구별 최고금액)	○ 1인 324,186원 2인 536,905원 3인 738,476원 4인 928,901원 5인 1,056,160원 6인 1,191,780원	○ 1인 343,498원 2인 571,978원 3인 776,833원 4인 972,256원 5인 1,114,789원 6인 1,264,419원	”
○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	○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 (조부모,부모,아들,딸 등) ○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(며느리,사위 등) ○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(형제·자매)	○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(부모, 아들, 딸 등) ○ 좌 동 ○ 좌 동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(‘05.7.1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	○ 만성·희귀난치성 질환자	○ 12세미만 아동까지 확대	의료급여시행령 (’05.1.1)
○ 장애수당	가. 지급대상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 -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(자폐)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나. 지급금액 - 1인당 월 60천원	가. 지급대상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 <중증장애인> -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-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(자폐)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<경증장애인> - 장애등급이 3급~6급인 자 단,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(자폐)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나. 지급금액 ○ 중증장애인 - 1인당 월 60천원 ○ 경증장애인 - 1인당 월 20천원	○ 장애인복지법 제44조 ○ 동법시행령 제25조, 내지 제28조 ○ 동법시행규칙 제31조 (’05.1.1)
○ 저소득 모자· 부자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	○ 1인당 2만원	○ 1인당 5만원	모부자복지법 제25조

III 보건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암 확진자 치료비 지원	○ 국가암(5종)검진자 중 암 확진자 치료비 지원(50명) ※ 도 자체사업	○ 대상암 : 6종암 - 지원대상 : 정부 암 검진자 중 확진자 및 폐암환자(1,706명) ※ 국비지원사업	2005년도 국가암검진 사업지침 (’05.1.1)
○ 희귀·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확대	○ 대상질환 : 11종지원 - 신부전증, 근육병, 고셔병,혈우병,베체트, 크론병,다발성경화증, 아밀로이드증, 실조증, 유전운동, 페브리병 부신백질이영양증	○ 대상질환 : 71종지원 - 희귀난치질환으로 구분된 모든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	2005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지원 지침 (’05.1.1)
○ 미숙아 의료비 지원	○ 1인당 300만원	○ 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체중별로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	모자보건법 제10조 (’05.1.1)
○ 암 검진대상 기준 확대	○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30% 대상	○ 의료수급자 및 건강 보험 하위 50% 대상자	”
○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연령 확대	○ 만15세까지 지원	○ 만18세 까지 지원	”
○ 농어촌여성 건강검진 항목 추가	○ 종 전 - 검진항목 : 1종 (골다공증검진)	○ 검진항목 : 2종 -갑상선기능검진 추가	도 자체사업 (’05.1.1)

12 환경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	(보 완)	○ 가스상 물질 소각시설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- 일산화탄소배출 소각시설 • 소각용량 2톤/시간 이상인 시설 - 600(12)ppm → 50(12)ppm이하 • 소각용량 200kg/시간 이상 2톤/시간 미만인 시설 - 600(12)ppm → 200(12)ppm이하 • 소각용량 200kg/시간 미만인 시설 - 500(12)ppm → 300(12)ppm이하 ※ 기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	대기환경보전 법제8조제1항 (’05.1.1)
○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	(신 설)	○ 市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○ 소각, 퇴비화,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가능	폐기물관리 법시행규칙 (’05.1.1)
○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	(신 설)	○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	악취방지법 (’05.2.9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	(신 설)	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6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(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함)계획 ○ 도로법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공사(고속국도제외)	환경정책기 본법시행령 제7조 (’05.1.1)
○ 불법 포획한 야생 동물을 먹는자 처벌	(신 설)	○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·추출가공 식품 등을 먹는 것을 금지 ※ 야생동물 밀렵·밀거래금지 목적	야생동식물 보호법 (’05. 2.10)
○ 양서·파충류도 보호대상동물에 포함	(신 설)	○ 양서류, 파충류도 보호대상 동물에 포함하여 포획금지	야생동식물 보호법 (’05.2.10)

13 수질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시행	미 시행	○ 금강수계 9개 시·군중 市지역(천안, 공주, 논산, 계룡)오염총량제 시행	금강수계물관 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(’05. 8. 1)
○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	수질기준 미설정	○ 수질기준 설정에 따른 유수식양식시설, 양만장, 수조식양식시설에서는 동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함	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(’05.5.1)

Ⅳ 건축분야

① 상가·오피스텔 등 후분양제 도입

- 종 전 : 자율 분양제
- 달라지는 내용
 -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신탁사업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 신고 후 분양하고
 -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이상의 연대 보증을 받아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 공사의 3분의 2이상 완료 후 분양
- 관련법규 :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3조, 제4조
- 시행일 : 2005년 4월 23일(시행령, 시행규칙 의견수렴 중)

②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제도 시행

- 종 전 : 분양가격 자율화
- 달라지는 내용
 -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, 공사비, 설계감리비 등 기준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 및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
 -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·공급되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·지자체,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세목별 분양 가격 내역을 공개 하여야 함
- 관련법규 : 주택법 제38조의 2
- 시 행 일 : 2005년 상반기 중
 - ※ 적용은 시행일이후 사업승인 신청 분부터